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7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덤핑낙찰자 제명하자”

호황의 시기에는 덜 하지만 불황의 시기에는 수주단가를 낮추어서라도 물량을 배정 받고자 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1958년 7월 22일자 인쇄문화시보에는 시가 8백만 원짜리 인쇄물을 5백90만6천 원에 낙찰 받아 협회에서 제명 조치를 받을 뻔한 인쇄인의 이야기를 싣고 있다. 입찰은 1958년 7월 12일 모 은행에서 있었다. 어려웠던 시기인지라 아무런 제약이 없이 입찰을 하게 되면 과다 출혈 경쟁이 뻔한 탓에 13명의 입찰관계자들이 모여 과다 출혈 경쟁을 하지 않기로 사전 담합(?)을 한 상태였다.

11시 입찰 시간을 앞두고 9시30분부터 12명의 입찰자가 모였다. 나타나지 않은 1명의 입찰자는 입찰 시간 30여분 전에야 나타났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마감시간에 임박해 나타난 회사가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30분전에 가까스로 나타난 낙찰자의 시간이 아닌 낙찰자가 제시한 단가였다. 이 낙찰자의 낙찰가는 예상 낙찰가의 74.5% 수준인 590만6천원이었다. 출혈 경쟁을 하지 말자는 사전 논의를 묵살한 이 낙찰자에 대해 나머지 입찰자 12명만이 아닌 다수의 인쇄인들의 하나 같은 목소리는 업자 의리를 저 버린 회사를 협회에서 제명시키자는 것이었다.

인쇄 영역 침해하는 교도행정

1962년 7월 13일 인쇄문화시보에는 교도소의 영업행위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았던 당시의 어려웠던 상황을 전하고 있다. 법무부가 교도작업관용법 및 동 시행령을 발표하기에 앞서 인쇄업계에서는 교도작업관용법이 중소기업계 및 인쇄업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당 시행령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교도작업관용법의 시행을 단행한 바 있다.

하나, 형무 작업은 일정한 한계를 유지할 것이다.

둘, 작업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무 작업은 기술지도만을 철저히 하여 사회 복귀 후 일반 인쇄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해 줄 것이다.

셋, 형무 작업의 관용주의는 그 범위가 업자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행될 뿐만 아니라 본래의 사명인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 전도를 위주로 할 것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형무 작업만 한다면 교도소 내 인쇄공장이 지방 관공서 입찰에 참여하는 바람에 업계가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판국에 교도소 내 인쇄공장들이 시설 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설사 전도 교육을 받은 인원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놓고 있는 실정에 재소자들을 직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의를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것

1962년이 교도행정 때문에 문제였다면 1년이 지난 1963년에는 상이군인 재활원이 문제였다.

1963년 7월 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원호처를 방문해 윤영모 준장에게 재활원의 인쇄 영업 행위를 재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업계 대표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대표단은 윤영모 처장에게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기술자의 2.5%가 놓고 있는 상태에서 원호처 수원 공장의 실질 명목인 기술자 양성이 무의미하다"고 전하고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재활원 인쇄공장 역시 입찰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인쇄업계는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아울러 "정부 인쇄비 예산 5억원의 상당량을 군부 공장과, 체신부, 교통부 등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원호처까지 뛰어 들면 인쇄업계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처장은 "원호처의 인쇄공장 운영은 불구자인 상이군경의 재활을 열어주기 위한 사회 보장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민간업체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인쇄인 여러분들이 상이군인들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도와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아울러 윤 처장의 말을 빌려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혁명 정부가 여러분에게 타격을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聲明)했다"고 전하고 있다.

하부까지 전달되지 않는 중소기업육성대책

1964년 7월14일은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계열화와 '협동조합을 통한 일반 경쟁입찰 참가 및 단체수의 계약'을 추진하게 된다. 1965년 7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중소기업육성대책 발표 1년 후의 우리 경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날 인쇄문화시보의 1면 헤드라인은 '각 시도 인쇄협동조합 운영에 전기조성?'으로 단체수의 계약제도가 과연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

인쇄문화시보가 '?' 표를 던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육성책에 따라 상공부에서는 세부 시행지침을 각 시도 관련 관청에 보내게 된다. 하지만 상공부의 협조 공문은 어찌된 일인지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 단체수의계약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이에 상공부는 1965년 5월4일에 내무부 장관에게 다시금 공문을 보내 '협동조합의 일반 경쟁 입찰 참가 및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게 되고 내무부는 다시금 1965년 6월24일에 각 지방 관공서에 이를 시행하라는 강력한 내용의 권고문을 보내게 된다.

상공부에 내무부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을 얻은 각 조합이 다시금 해당 지방 관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게 되는데 인쇄문화시보는 상공부와 내무부 그리고 지방 조합의 이러한 정책이 중소기업육성정책 발표 1년이 지난 시점에 먹혀들 것인가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벗짚 펄프 생산 공개시험

1968년 7월1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일본과 기술협약을 맺어 생산하게 된 벗짚 펄프에 관한 기사를 실고 있다.

국산 벗짚 펄프 장려 책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일본에서 온 기술진들은 기존 30%에 불과하던 벗짚 수율은 80%까지 끌어 올리는 시범을 보이며, 당시로서는 매우 흔한 편에 속한 벗짚을 통한 제지 생산의 가능성을 더 한층 밝게 만들어 주었다.

68년 당시 국내에는 70여 개의 펄프 제조 공장에서 연간 20만톤에 달하는 종이를 생산하고 있었으나 주원료인 화학 펄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원료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짚을 이용한 지류는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1천만톤 가량의 벗짚 및 보리짚이 생산되었는데 행사에 참가했던 농림부 관계자는 400만톤 정도가 벗짚 펄프 제작을 위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용우기자>